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5742(본소), 2020나2015759(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문주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현

담당변호사 조성철

변론 종결 2020. 10. 8.

판결 선고 2020. 11. 5.

제 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합1934(본소), 2019가 합
103592(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1. 접수 제38229, 382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에게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무안등기소 2009. 6. 26. 접수 제13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이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9쪽 11째 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이 사건 제1-1, 2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확정할 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위에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 A은 2004. 3. 4. 무렵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해당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원고 A은 2013. 7. 31. 남편인 원고 B이 피고로 흡수합병 되거나 상호가 바뀌기 전의 회사에 재직 중 행한 업무상, 업무 외 행위로 인한 손실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고 연대보증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3. 8. 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채무자를 원고 B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각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로 하는 이 사건 제1-1, 2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원고 B은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1990년 무렵부터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1).

이러한 원고 A과 피고 회사들의 관계(원고 A은 피고 회사들에 근무하였던 원고 B의 아내이다), 이 사건 약정은 연대보증의 성격과 함께 원고 A의 주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이라는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 B은 피고들 회사에 서 근무한 지 2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원고 A의 연대보증 채무를 약정 당시 예상할 수없는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은 보증인 보호 취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A이 피고들 회사에 보증하는 채무의 보증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10쪽 14, 15째 줄 "자금세탁을 위한 것으로 알고 계좌 명의를 빌려준것이라는"을 "앞서 본 바와 같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둘째 줄 "취득하였다는 점" 다음에 "(S과 원고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S이 원고 B에게 해당 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쪽 3째 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 B을 S관련 횡령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원고 B이 '횡령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달리 횡령에 대한 방조로 기소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송혜정, 판사 민달기

1) 이 사건 약정 당시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는 모두 대표이사가 현재 피고 대표이사로
같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 B은 주식회사 D 혹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